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보호사건 식별정보 등의 예외적 보도허용요건 추가 등〉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1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아동보호사건 보도 금지대상 정보에 “범행수단” 추가 및 위반시 벌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및 제62조제3항)

□ 현행법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이하 “언론인”이라 함)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¹⁾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하 “식별정보”라 함)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이하 “보도”라 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언론인이 이러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35조제1항 및 제62조제3항).

□ 개정안은 아동보호사건 보도 금지대상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언론인이 위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62조제3항).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u>500만원</u>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 <u>1천만원</u> ----- -----.

□ 다만, 현행법의 보도 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및 위반시 언론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²⁾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보호사건 보도 금지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등 예외적 보도 허용요건 추가(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법은 가해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등을 보도금지 대상 정보로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①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35조제2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생략) <단서 신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생략) <u>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의</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피해아동(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의 유족을 포함한다)과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을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현행법상 언론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언론인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³⁾이나, 이러한 권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이하 ‘언론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이하 ‘보도’라 한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언론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 (생략)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하므로, 알권리를 제한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헌법 제21조제4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4)).⁵⁾

□ 그러므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예외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등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4)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1헌바358 전원재판부 결정 “알 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기본권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등 참조).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⁶⁾

○ 대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에 대해 비밀엄수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⁷⁾

6)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결정례의 내용을 과잉금지원칙의 판단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목적의 정당성)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는 학대 그 자체로부터의 직접적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사건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됨. 아동보호사건에 있어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수단의 적합성) 아동보호사건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면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됨.

(침해의 최소성) 현행법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으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 가능함. 또한,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과급력,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아동이 특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만을 금지할 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익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이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음. 그러한 보도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음.

(피해아동 측이 보도를 희망한 경우의 판단) 한편,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신원 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 측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원하는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

한편, 원심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나아가지 않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 참고로, 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역시 피의자·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051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는바, 언론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따른 범죄 불성립 주장을 배척하였음.

또한, 원심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법익 측면에서 보면 식별정보를 보도하기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가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궁극적으로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도 여부를 피해아동 측의 승낙 여부에 맡겨 아동의 보호를 처분 가능한 법익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범죄 불성립 주장을 배척하였음.

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주요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의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